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4. 2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원종진 의원 등 5명(조복희, 배지훈, 박정환, 윤권근)
- 발의일자: 2021. 4. 8.
- 회부일자: 2021. 4. 9.
- 상정 및 의결: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4. 21.)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실시되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물론, 조례입법 과정에 달서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참정권 확대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3조)
- 구청장은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등 개최,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구청장은 조례입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입법학교 등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1. 4. 8. ~ 2021. 4. 19.)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서구 조례입법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 등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법학교 등 교육사업 시행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는 주민의 조례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다르므로 법적 혼란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 답변 및 토론 요지

- 정의와 부칙 등 조례 제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요건들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례 실행을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리하여 제출 하기 바람.

-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추구하는 주목적과 발의자가 실현하고 싶은 조례의 가치를 충분히 파악하여 검토의견을 제출 하기 바람.
- 이 조례는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스스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의의가 있으므로 희망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발의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되도록 포괄적으로 그 수혜자를 정하고자 함. 단,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항이 수정될 때마다 조례를 함께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조례안 제1조를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함.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첨부서류: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달서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와”를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달서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와 조례입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 ----- ----- ----- -----. -----.